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51호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교육격차’라는 용어는 지역간에 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정적 의미가 있으므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대전광역시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로 개정함.

나. '지역간 교육격차'를 '학교간 격차'로 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
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cmdjyou@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간 교육격차”를 “학교간 격차”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교육격차”를 “학교간 격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u>지 역간 교육격차</u>를 해소하고 공교 육 내실화 및 우수한 인재를 양 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 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학</u> <u>교간 격차</u>----- ----- ----- -----</p>
<p>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생 략)</p> <p>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u>교육 격차</u> 해소사업</p> <p>2. ~ 5. (생 략)</p>	<p>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현행과 같음)</p> <p>1. ----- <u>학교간</u> <u>격차</u> -----</p> <p>2. ~ 5.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 번	발 의 의 원	서 명	비 고
1	박성재	박성재	
2	주영민	주영민	
3	김희영	김희영	
4	구기호	구기호	
5	권원규	권원규	
6	김민식	김민식	
7	황인호	황인호	
8	유재원	유재원	
9			
10			
11			
12			
13			
14			
15			